

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!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양천구 제2선거구,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허 훈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는 민간위탁 재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

재위탁 시에도 매번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

추진 절차를 재계약과 같은 절차로 적용할 수 있도록

간소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○ 또한, 현재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

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기준을

임의규정으로 바로잡고

-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회계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,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해 회계사만이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